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해설편 28~28p 2~2줄 문제 04 번호 : 04	해설	④ 행정절차법상 신청에 의한 청문은 인정되나, 신청에 의한 공청회는 인정되지 않는다(행정절차법 제22조).	④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처분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청문을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수정 사유	2020년 도서 개정 전 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사항 표기
해설편 40~40p 3~3줄 문제 14 번호 : 14	해설	①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①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2호
		수정 사유	2020년 도서 개정 전 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사항 표기
해설편 63~63p 4~4줄 문제 04 번호 : 04	해설	① 국가배상법 제7조 제1항	① 국가배상법 제7조
		수정 사유	2020년 도서 개정 전 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사항 표기
해설편 68~68p 14~15줄 문제 17 [Key 답] 번호 : 17	개념, 공식-설명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 추가 / ※ 2020. 6. 11. 시행)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수정 사유	시행 예정 법령으로 인한 내용추가
해설편 74~74p 15~15줄 문제 10 번호 : 10	정답	[정답] ④ ②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정답] ②·④ ②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옳지 않은 선지이다.
		수정 사유	2020년 도서 개정 전 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사항 표기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해설편 74~74p 27~27줄 문제 10 번호 : 10	개념,공식-설명		※ 2020. 6. 11. 시행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 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수정 사유	시행 예정 법령 [Key 답] 내용 추가
해설편 96~96p 16~16줄 문제 04 번호 : 04	개념,공식-설명		개인정보보호법(2020. 8. 5.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수정 사유	시행 예정 법령 [Key 답] 내용 추가

일부 정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수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2020년 도서 개정 전 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사항 표기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